기계 · 메카트로닉스분야 마이스터고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2026. 7

인성과 미래직무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영마이스터 육성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Gyeongbuk Machinery Technical High School

마이스터고
MEISTER SCHOOL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 마이스터고)

1 모집계열 및 모집정원(남)

계 열			기계·메카트로닉스 계열
학 급 수			13학급
정 원			234명
모집 정원	정원내	일반전형(90%)	210명
		특별전형(10%)	24명
비 고			■ 1학년 2학기 학과 선발 기준에 의거 학과로 편성 정밀기계과 5학급(기계설계제작(2), 정밀기계(2), 재료가공(1)) 자동화설비과 4학급(자동화시스템(2), 자동화설비보전(2)) 전기전자제어과 4학급(전기제어(2), 전자제어(2)) ※ 전공 학급수 및 전공명은 변경될 수 있음.

※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 10. 19.(월) ~ 10. 22.(목) 17:00까지	○ 인터넷 접수 후 제출 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본교 원서접수처로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할 것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10:00	○ 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확인 - (대구 관내 중학교): 나이스(고입)을 통해 중학교에서 확인 - (타시도, 검정고시): 본교 원서 접수사이트 ○ 전형별 1.5배수 선발
2차 전형 (심층면접, 신체검사)	2026. 10. 30.(금) 13:00	○ 전형 장소: 본교 입학전형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체검사 및 구술면접
합 격 자 발 표 (입학허가예정자)	2026. 11. 4.(수) 10:00 이후	○ 원서 접수사이트 또는 지원 학교별로 통보

* 원서 접수사이트

- (대구 관내 중학교) 나이스(고입)시스템(http://assign-dge.neis.go.kr)
- (타시도, 검정고시) 본교 원서 접수사이트(http://gbgigong.dge.hs.kr/) 팝업 게시

3 지원 자격

1. 일반전형

기계·메카트로닉스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졸업 후 취업할 의지가 명확한 자로서
가.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가업승계자 전형

대 상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사업자등록) 경영자로 사업 경영 기간 합산 **3년 이상**이며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녀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예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단,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관련 등 기업체는 불가함.)

나. 사회통합 전형

전형 구분		대 상
기회균등전형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인정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사회다양성전형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시설수용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10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경찰(경사 이하)·소방(소방장 이하)·교정(교위 이하) 공무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 ■ 우편집배원 자녀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입양자녀·입양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비법정),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사회다양성 전형: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적용(<덧붙임 1> 참조)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할 수 있음

3. 특례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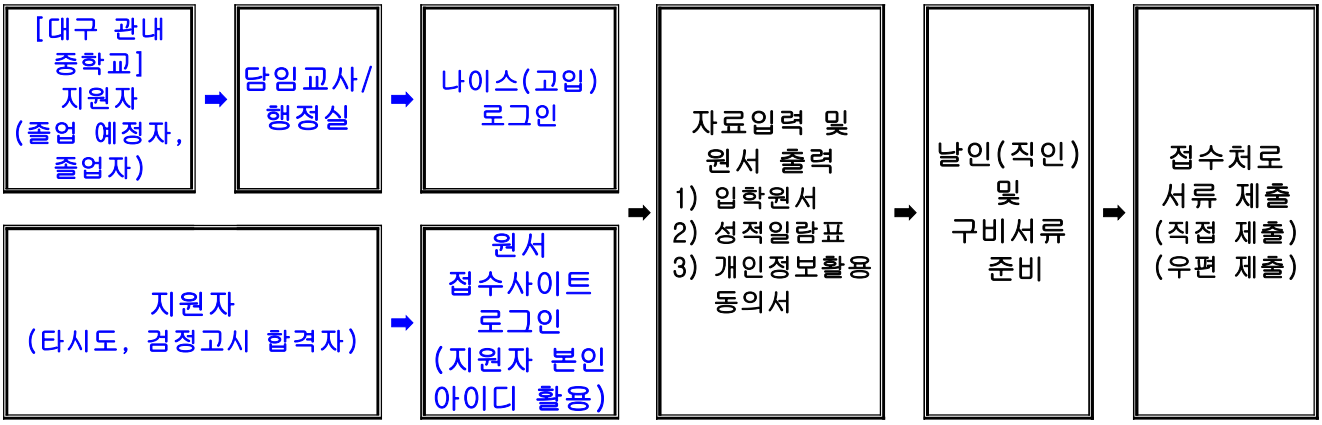
※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 모집 정원 내에서 선발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선발하며, 기회균등 전형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4 지원 방법 및 원서 작성 요령

1. **단일계열 모집**이므로 별도의 지망 및 학과(전공) 선택 없음
2. 본교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성적을 입력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 번호를 확인한 후 보훈 번호를 입력
3.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입학원서」와 「개인별 성적 일람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 및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2026. 10. 22.(목) 17:00까지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본교 신입생 원서접수처로 제출
 (우편으로 입학원서와 구비서류 제출 시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함,
4. 기재사항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음
5. 지원 절차



※ 원서접수사이트
- (대구 관내 중학교) 나이스(고입)시스템(http://assign-dge.neis.go.kr)
- (타시도, 검정고시) 본교 원서 접수사이트(http://gbgigong.dge.hs.kr/) 팝업 게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

※ 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2026.10.22.(목) 17: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5 전형 방법

1. 1차 전형(서류전형)

가. 모집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우선 선발

구 분	모집인원(명)	1.5배수 인원(명)			비고
		특별전형	일반전형	합계	
기계 · 메카트로닉스 계열	234	36	315	351	

나. 1차 전형은 교과성적 및 출결 반영

다. 모집 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 적용

라. 특별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함.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마.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1.5배수 미만이면 지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바. 1차 선발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사. 1차 전형 합격자는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및 각 중학교로 통보하며, 응시자 개별 통보는 없음

2. 2차 전형(심층 면접, 신체검사)

가. 응시 자격 :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나.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2차 전형 점수는 0점으로 처리

다.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 2차 전형 실시

라. 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음.

※ 단, 입학 후 취업 등의 진로 결정에 따른 신체검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최종 합격자의 선발

▢ 대구광역시 모집군 이외의 대상자가 전체 모집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합격자의 선발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가. 특별전형

1) 모집요강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특별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2) 위 방법으로도 미충원된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선발

3)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

나. 일반전형

1) 일반전형 지원자와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함
(특별전형 지원자의 성적은 일반전형 지원자 성적 비율로 산출)

2) 모집요강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일반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 위 나, 다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12개 기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4. 동점자 처리는 교과성적, 심층 면접, 출결, 학교생활, 봉사활동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함

6 성적산출

1. 전형별 성적 점수 및 반영 비율

구 분		1차전형		2차전형				총점(비율)
		교과성적	출 결	봉사활동	학교생활		심층면접	
					리더십	모범상		
일반전형	졸업예정자 졸업생	100 (40%)	45 (18%)	3 (1.2%)	6 (2.4%)	6 (2.4%)	90 (36%)	250점 (100%)
	검정고시	145 (58%)	·	·	·	·	105 (42%)	
특별전형	졸업예정자 졸업생	75 (30%)	45 (18%)	3 (1.2%)	6 (2.4%)	6 (2.4%)	115 (46%)	250점 (100%)
	검정고시	120 (48%)	·	·	·	·	130 (52%)	

가. 교과성적을 제외한 출결, 봉사활동, 학교생활의 **적용 기준일은 2026.9.30.**(단,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상장 및 임명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등재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대조필' 이 되어 있어야 함)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과목별 취득한 점수를 성취도 환산점으로 산출하여 과목별로 반영

2. 교과성적

가. 교과성적 반영 비율 :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비율로 반영**

나. 졸업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체육·음악·미술 포함)**
졸업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
(단, 성취도에 'P' 로 기록된 교과는 교과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전 교과 성취도를 환산(A=5, B=4, C=3, D=2, E=1)하여, 환산점의 총합을 과목 수로 나누어 반영
(단, 체육·음악·미술교과 등 성취도가 3등급(A, B, C) 평가로 나오는 경우, A(우수)는 5점, B(보통)는 4점, C(미흡)는 3점을 적용)

라.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는 경우, 성적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동일 학년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을 100% 반영

예시) 1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2학기 성적을 100% 반영

마. 교과성적 산출 방법

1) 일반전형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8\times\frac{A_{31}}{N_{31}}\right)$	100점
졸업생	$\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4\times\frac{A_{31}}{N_{31}}+4\times\frac{A_{32}}{N_{32}}\right)$	
검정고시	$20\times\left[\left(\frac{A}{N}\right)\right]$	

2) 특별전형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0.75\times\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8\times\frac{A_{31}}{N_{31}}\right)$	75점
졸업생	$0.75\times\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4\times\frac{A_{31}}{N_{31}}+4\times\frac{A_{32}}{N_{32}}\right)$	
검정고시	$15\times\left[\left(\frac{A}{N}\right)\right]$	

3) 산출 공식의 적용

가) 졸업예정자

(1) A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2) N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나) 졸업생

(1) A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되는 졸업생, 수=5, 우=4, 미=3. 양=2, 가=1)

(2) N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다) 검정고시

(1) A : (취득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검정고시 과목별 점수	100 점이하 95 점이상	95 점 미만 90 점 이상	90 점 미만 85 점 이상	85 점 미만 80 점 이상	80 점 미만
환산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2) N : (이수한 과목 수)

바. 1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1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left(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8\times\frac{A_{31}}{N_{31}}\right)\times\frac{100}{80}$	100점
	2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8\times\frac{A_{31}}{N_{31}}\right)\times\frac{100}{60}$	
졸업생	1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left(4\times\frac{A_{21}}{N_{21}}+4\times\frac{A_{22}}{N_{22}}+4\times\frac{A_{31}}{N_{31}}+4\times\frac{A_{32}}{N_{32}}\right)\times\frac{100}{80}$	
	2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left(2\times\frac{A_{11}}{N_{11}}+2\times\frac{A_{12}}{N_{12}}+4\times\frac{A_{31}}{N_{31}}+4\times\frac{A_{32}}{N_{32}}\right)\times\frac{100}{60}$	

3. 출결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6.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나. 출결 성적산출

1) [45 - {미인정 결석일 수×3+(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2]점

2) 출결 성적의 최저점은 0점

다. 미인정 결석일 수 및 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1) 3개 학년 미인정 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2) 3개 학년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라.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마.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202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4. 봉사활동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적용 기준일 (2026.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봉사활동만을 인정함(단, 기재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야함)

다. 봉사활동 성적 산출

1) 학년도 별 봉사 기준 시수표에 근거하여 평점 부여

2) 2027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현재 3학년) 기준 봉사성적 산출 기준]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7시간 미만	0.5점	7시간 미만	0.5점	7시간 미만	0.5점

라. 졸업자

1) 2026년 2월 중학교 졸업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6년 2월 졸업자 기준 봉사성적 산출 기준]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기준 시수	평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이상	1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0.75점
7시간 미만	0.5점	7시간 미만	0.5점	7시간 미만	0.5점

2) 2021~2022학년도 점수 : 5시간 이상(1점), 5시간 미만 3시간 이상(0.75점), 3시간 미만(0.5점) 부여

3) 2020학년도 점수 : 이수 시간과 관계없이 만점(1점) 부여

4) 2020학년도 이전 점수 : 학년별 20시간 이상(1점), 20시간 미만~15시간 이상(0.75점), 15시간 미만(0.5점)

5. 학교생활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6.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리더십부분 및 수상내역만을 인정함(단, 기재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야함)

다. 리더십

1) 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 학급 반장에 한함**(학급 부반장 미포함)**

2) 리더십 성적산출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1.0	1.0	1.0	1.0	2.0	
졸업자	1.0	1.0	1.0	1.0	1.0	1.0

3)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0점(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2.0점)만 인정

4) 임원의 활동 기간이 해당 학기 전체일 경우에만 인정(중도 포기 및 변경 시 미인정)

라. 모범상

1) 효행상, 선행상 등의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모범, 선행, 효행, 공로, 봉사)

예시) 표창장(모범), 표창장(선행), 표창장(효행), 표창장(공로), 표창장(봉사)

2) **행동덕목별 최우수 모범생: 학교별『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모범생으로 상을 받은 자**
3) 건당 1.5점을 부여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모범상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씩만 인정

6. 심층 면접

가. 소질, 적성, 인성, 진학 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

나. 평가 영역별 내용 및 방법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반영비율
직업공통능력(적성)	언어영역, 수리영역, 공간영역, 집중영역 등	선택형	70%
인성 및 성장 가능성	태도, 진학 동기, 학업계획(진로비전), 마이스터고 이해 등	구술면접	30%

※ 평가 내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다. 각 전형별 평가 방법은 동일하며 받은 총점에서 전형별 총점으로 점수를 환산함

라. 구술면접은 면접영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다면평가로 실시함

7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으나,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 후 취업 등의 진로 결정에 따른 신체검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신체검사 이상증상] 목록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의 소견서 제출 필수
2. 전문의 소견서와 지원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3. 전문의 소견서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 11. 2.(월), 16:00까지**

나. 제출 대상자

1)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해당하는 자
2) 2차 전형 시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이상증상]**이 발견된 자

[신체검사 이상증상]

가. 좌·우 교정시력이 모두 0.3 미만
나.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여 학교생활 및 실습에 지장이 있음
다. 상·하지의 기능 장애로 실습 등에 지장이 있음
라. 학업 수행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뇌전증 또는 정신 질환이 있음
마. 사물의 원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 색각 이상(색맹이나 색약 등의 증상도 포함)으로 학교생활 및 실습 등에 큰 지장이 있음
바.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질환 및 면역성 질환 등의 병력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나 실습 등에 지장이 있음

다. 제출 방법: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이메일(gbgigong_gyomoo@naver.com)**로 제출

라. 제출 후 반드시 본교에 전화 연락(☎053-231-8312~4, 8322)하여 제출 여부 확인해야 함.

8 기타 사항

1.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2.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지원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등록 포기자 포함)는 2027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에 재응시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8항)
3.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및 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음
4.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 및 합격 후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환하지 않음

9 제출 서류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제출 서류</th></tr>
<tr><td>공통
사항</td><td colspan="2">1. 입학원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한 입학원서) 1부
2. 개인별 성적 일람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성적 입력 후 출력)
3.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원점수, 과목 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 수)만 출력

※ 단면 출력
※ 흑백 인쇄 가능
※ 증명사진은 3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며 입학원서의 증명사진에 학교장 직인 날인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해당 학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서 제출</td></tr>
<tr><td rowspan="8">해당자</td><td>졸업자</td><td>주민등록등본</td></tr>
<tr><td>검정고시 합격자</td><td>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전 과목 성적증명서 사본</td></tr>
<tr><td>가업승계자</td><td>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납세 증명서, 가업승계 서약서(덧붙임 7)</td></tr>
<tr><td>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기회균등전형)</td><td>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 3)
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2)</td></tr>
<tr><td>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사회다양성전형)</td><td>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 3)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혼합(지역+직장)
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2)</td></tr>
<tr><td>특례전형 대상자</td><td>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4)</td></tr>
<tr><td>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td><td>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td></tr>
<tr><td colspan="2">기타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td></tr>
</table>

입학관련 문의처	학 교 홈 페 이 지 : https://gbgigong.dge.hs.kr/ 입 학 관 련 문 의 : 053) 231 - 8322, 8312~8314 팩스 : 637 - 8196 생 활 관 (기 숙 사) : 053) 231 - 8340, 8341 주 소 : [4274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상인동)

덧붙임 1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 8분위 확인 기준표**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7인	15,225,000	584,741	579,249	634,423
8인	16,759,000	634,423	628,429	712,921
9인	18,294,000	712,921	697,282	838,330
10인	19,829,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는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덧붙임 2 **2027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증빙 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처
① 공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학부모 확인서	<덧붙임 3>
②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차상위계층		교육비지원확인서	해당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지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구청, 주민자치센터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 곤란자		학교장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	
사회 다양성 전형	③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④ 사회 다양성 전형 해당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 통지서	관할 교육(지원)청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청, 통일부
		다문화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해당자), 귀화증명서(해당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추가 서류 없음	
		조손가정 자녀	추가 서류 없음	
		순직 공무원의 자녀	순직 확인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관련 사실(보상) 확인서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재직증명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무형문화재 인증서	
		입양 가정 가족 구성원	입양사실확인서	
		한부모가족 자녀(비법정)	추가 서류 없음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추가 서류 없음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학교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회다양성 전형의 각 유형별 제출 서류 서식은 '입학전형요강'에 구체적으로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및 보호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로 갈음함

※ 제출서류

- 기회균등전형: ①사회통합전형 공통, ②기회균등전형 해당 제출서류
- 사회다양성 전형: ①사회통합전형 공통, ③사회 다양성전형 공통, ④사회다양성전형 해당 제출서류

덧붙임 3 **2027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 인 서

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생	
	부			부	
	모			모	
주 소					
학생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졸업예정)			
지원 유형	기회균등전형	유형()			
	사회다양성 전형	유형(), 소득분위 ()분위			

본인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학 생 : (서명)

학부모 : (서명)

()고등학교장 귀하

※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적용한 소득분위를 반드시 기재

덧붙임 4 **해외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 서류**

해당자 구분 /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이상 (초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4호)	비 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 졸업, 성적 증명서	○	○	○	○	○		· 재학학년(기간) 명시 ·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표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 증명서		(○)	(○)				·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 동일 학교급 특례입학시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학생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외국 거주(체류) 기간 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부,모,학생)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의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학생)	○ (학생)		외국인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는 해당자에 한함

※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특례 입학 서류 발급처

구비서류	발급처	비고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시 · 군 · 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민원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처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시 · 군 · 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제3국 수학인정서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부모의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 · 군 · 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북한이탈주민에 한함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증명서	거주지 관할 시 · 도교육청	
아포스티유 인증	해당 국가의 외교부	외국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인증
재외공관 경유 증명	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학적 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덧붙임 5 **경제적 곤란 학생의 학교장 추천 절차**

▶ (추천 절차) ① 학생(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지원 의사 표시 → ②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확인 → ③ 해당 고교에 추천

기회균등 전형 학교장 추천자 신청	⇨	실사 및 서류 검토	⇨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 심사	⇨	학교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검토
학부모→학교		담임교사		중학교		중학교→외고, 국제고, 과고, 자사고		고등학교

***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추천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 (추천 방법) 저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정환경 실태조사(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추천서(중학교 자율 서식)에 상세히 기재

▶ 증명서류(예시)

구 분	서류	구 분	서류
실직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부동산 채권 압류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의료비 지출 과다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급여 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등

※ 증명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추천서에 미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추천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1주택 거주자로 주택이 경매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덧붙임 6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대장번호	

학 교 장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 중학교 3학년 ()반 번호()		
	() 년 2월 (졸업예정 / 졸업)		
추천분야	3. 지원자격 - 2. 특별전형 - 기회균등 전형_인정대상자(가정형편)		
추천사유			

2026년 월 일

추천자 : () 중학교장 (직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덧붙임5’의 경제적 곤란 학생의 학교장 추천 절차 참고

※ 중학교에서는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학교장 추천서 대장번호 : 본 추천에 대한 중학교에서 자체 보유한 학교장 추천 대장 번호를 입력

덧붙임 7 **가업승계 서약서**

가 업 승 계 서 약 서

수험번호 :

출 신 중 :

성 명 :

상기명 본인은 기계 · 금속 · 전기 · 전자 · 메카트로닉스 계열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녀로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가업승계 예정자 특별전형에 합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입학 후 가업 또는 가업과 유사한 계열의 직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 가업을 승계받기 위하여 졸업 후 가업 또는 가업과 유사한 계열의 직종에 취업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학부모 성명: (서명)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